

[2017년 해외통신원 1월 원고] 프랑스

## 부르키니, 그리고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의 자유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작년 9월,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 해변에서 찍힌 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바로 여성 이슬람교도를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를 입고 있던 무슬림 여성이 무장한 경찰로부터 둘러싸여 부르키니를 탈의하라는 압력을 받고, 부르키니를 벗고 있던 장면이다. 해변에 앉아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도 들었다고 한다. 사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여성은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프랑스 내 30여 곳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거나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 등 무슬림 여성의 복장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부르키니와 같은 무슬림 복장이 공공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모든 신체 부위를 가려야만 하는 부르키니야 말로 여성을 억압하는 의복이라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들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다른 여느 여성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어느 지역 및 환경에서 지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 여성의 자유는 프랑스 내 무슬림 사회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파리 근교의 한 도시 세브랑(Sevran)에서는 여성들이 외출 하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신체를 가리는 부르카(burka)를 입어야 하며, 여성은 입장 불가능한 장소들이 도처에 있었다. 프랑스 국영방송 2TV와 프랑스 내 양성평등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 Brigade Des Mères (BDM)가 직접 나서 지역 내 여성들의 일상 현황을 취재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여성은 공공장소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험 차원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 2명이 일반 주점인 바(bar)에 들어가려고 하자, 입장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일조차도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보도된 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Digital Affairs) 악셀 르메르(Axelle Lemaire)는 “이는 무슬림이라는 종교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프랑스 내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입장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여성의 스커트 착용, 홀로 길거리를 걷는 등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항의 시위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결국 부르키니에서 비롯되어 여성 인권까지 번지게 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옷을 입거나 집 밖을 돌아다니는 기본적인 행동에 있어 ‘무슬림 여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프랑스 당국 차원에서, 또는 무슬림 남성들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적, 종교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복장은 본인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특정 종교에 대한 프랑스 정부 또는 지역당국 차원에서의 법적 제재는 큰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들이 맞물리면서, 무슬림에 대한 시선이 항상 따뜻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이나 문화에 기반을 둔다는 근거로 프랑스 내 무슬림 사회에서도 무슬림 여성들의 이동, 또는 의상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관용(tolerance)의 나라 프랑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의 오늘날은 아직 자유로운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 참고자료

"Women shunned in some Muslim neighborhoods in France," 2016년 12월 14일자, RT News,

<https://www.rt.com/news/370265-women-shunned-in-france/>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This isn't Paris. It's only men here' - Inside the French Muslim no-go zones where women aren't welcome," Telegraph, 2016년 12월 18일자,

<http://www.telegraph.co.uk/news/2016/12/17/french-bar-tells-women-isnt-paris-men/>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Muslim woman wears burkini on French beach as tolerance experiment and immediately gets abuse," 2016년 9월 18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burkini-ban-muslim-woman-threatened-beach-police-france-islam-terrorism-a7315191.html>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해외통신원 1월 원고] 영국

## 워싱턴 여성 행진, 대서양을 건너 런던으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수십만 명이 참가한 이른 바 ‘여성 행진(Women’s March)’이다. 이 행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비하 발언 및 태도에 반대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행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새 정부에게 “인종, 민족, 종교, 이민 여부, 성적 정체성, 경제적 상황, 연령 등의 요소들과 관계없이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단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인종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문제 개선 등 폭넓은 사회 내 불평등 문제들을 제기하는 장이 되었다.

이 여성 행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도 대규모 행진이 개최되었다. 런던 여성행진에는 참석 인파가 약 십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추산되며, 본 행진에는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외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런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에든버러, 리버풀 등 영국 내 도시 곳곳에서도 여성행진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행진에는 다양한 여성 단체 및 인권운동 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였다. 행진에 참여한 영국 Women’s Aid 대표 폴리 니엣(Polly Neate)은 “여성혐오(misogyny)에 기반을 둔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퇴치를 주장하기 위해 본 런던 여성행진을 지지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왜 영국에서는 이웃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달리 큰 규모의 여성행진이 개최된 것일까? 우선 영국 내 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하나의 촉진제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여성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의제 이외에도, 영국 내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이슈들 역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난민 문제 개선,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의 여성 낙태 금지법 반대 등이 그것이다.

참가자들 중에는 자녀들과 참가한 부모들이 많았는데, 다음 세대에도 현재의 양성 불평등, 여성혐오증 등과 같은 문제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행진에 참여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 여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혐오성 발언을 서슴지 않던 트럼프가 미국의 새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마치 100년 전 시대로 되돌아 간 것 같아 현 세대의 일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남성 참가자들도 상당 수 있었는데, 일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양성 불평등 문제는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양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남성들이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등 주장하였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발한 여성 행진은 그 열기가 계속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지난해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에서 약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여성행진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여성 행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시위 피켓에만 남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참고자료

Chloe Chaplain (2017), “Women’s March on London: 100,000 activists demonstrate against gender inequality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Evening Standard, 2017년 1월 21일자,  
<http://www.standard.co.uk/news/london/womens-march-thousands-of-activists-march-on-the-streets-of-london-in-support-of-equality-following-a3446331.html>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Emma Harrison (2017), “Women’s March: Why are UK women protesting?” BBC News, 2017년 1월 20일자,  
<http://www.bbc.com/news/uk-38665546>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Rachel Thompson (2017), “Why Londoners are standing in solidarity with the U.S. at the Women’s March,” Mashable, 2017년 1월 21일자,  
<http://mashable.com/2017/01/21/womens-march-london-solidarity/#.kgPgxl2fsqm>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 양성평등보너스 폐지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해 온 양성평등보너스(jämställdhetsbonus) 제도를 2017년 1월 1일자로 폐지했다. 본 제도는 부모 간 평등한 육아휴직 분배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 정부는 부모에게 총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더불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두었는데, 2012년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 부모가 함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더블데이(dubbeldagar)’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는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최소한의 육아휴직 기간(daddy quota)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시켰다. 모두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다. 양성평등보너스 제도 역시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마련한 유인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양성평등보너스는 어떤 구조의 제도였는가? 양성평등보너스(이하 평등보너스)는 기본적으로 부부 간 육아휴직의 평등한 사용 정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되는 현금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여 동등한 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동시에 양육할 수 있는 30일(dubbeldagar)과 부모 간 양도할 수 없는 90일(daddy quota)은 평등보너스 수혜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쪽 A가 육아휴직 160일을 사용하고 다른 한 쪽 B가 180일 사용했다면 보너스 급여는 160일을 사용한 부모 A의 휴직 일수를 기준으로 90일 daddy quota 기간을 제외한 70일 기간만큼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다. 게다가 70일 중에서도 dubbeldagar을 30일 사용했다면 평등보너스 지급일 수는 7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총 40일로 계산된다. 평등보너스는 일일 50 크로나로 아동 한 명당 최대 13,500 크로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합동양육기간 3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최대 10,500 크로나까지 지급).

사회보험청은 이미 평등보너스의 도입 1년 6개월 후부터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보너스 제도 시행 전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 각 4,000쌍의 육아휴직 배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총리였던 Fredrik Reinfeldt는 부부 간의 평등한 육아휴직 활용을 위해 경제적 유인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회보험청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보너스 신청 절차와 낮은 지원금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2012년부터 평등보너스가 각 부부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평등보너스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해 보였다. 2014년 사회보험청은 1,182명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양성평등보너스 제도를 통해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많은 부부들이 평등보너스 제도의 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회보험청의 Laura Hartman 연구원은 이를 통해 남녀 간의 평등한 육아 책임 분배가 스웨덴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스웨덴 부부들의 육아휴직 결정에 경제적 유인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일부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소득의 수준이 부부 간의 육아휴직 분배 정도와 직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스웨덴 남성들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더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들끼리 비교해 보더라도 임금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 더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더 소극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험청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부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더라도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며, 이들 부부 중 약 28%만이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임금 소득이 가정 소득의 60-79%를 차지하는 경우, 그 주체의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의 약80%를 차지하는 대상 역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금의 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의 전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 대비 제도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평등보너스를 폐지시켰다. 본 결정은 물론 평등보너스의

경제적 유인책으로써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웨덴 내에서도 부부 간 육아휴직 사용 결정 시 자신들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부부 간의 상호 관계 등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해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 ※ 참고자료

스웨덴 중앙정부  
<http://www.regeringen.se/ratts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15/11/ds-201555/>  
- 정부보고서 Slopad jämställdhetsbonus Ds 2015 55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lut/p/z0/ZcgxDslwDEbhszBkTgpMbBXiBCxVl8gQ06YkfyzsluvDwMb09D0\\_-sGPoC1PZLmBytfD-15PQja77tC7cG4whl0vLsiLVX-pnBIXQmL8nbgP3dGFVeTRyoKMKdiWF6pqVEqa2fTWsCrDy7PffQBoIHg2/](https://www.forsakringskassan.se/lut/p/z0/ZcgxDslwDEbhszBkTgpMbBXiBCxVl8gQ06YkfyzsluvDwMb09D0_-sGPoC1PZLmBytfD-15PQja77tC7cG4whl0vLsiLVX-pnBIXQmL8nbgP3dGFVeTRyoKMKdiWF6pqVEqa2fTWsCrDy7PffQBoIHg2/)

라디오뉴스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3578840>